

인천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나18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G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10. 14.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5. 선고 2018가소8487 판결

환송전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나7184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9367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는 파산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다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환송 후 당심에서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가. 제1심에서 원고는 2017. 12. 12. B를 상대로 2016. 11.경 지급한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2018. 10. 15.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B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20. 2. 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B는 환송 전 당심이 계속 중이던 2019. 7. 25.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409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1. 12. 변론을 종결하고 2020. 2. 4.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환송 전 당심판결은 B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라. 이후 환송 후 당심에서 B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1.경 지급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주장

B는 동생인 D와 함께 인천 중구 E 소재 F수족관(이하 '이 사건 수족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10월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수족관의 공장을 원고에게 줄 테니

D와 같이 위 공장을 운영해 보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월경 B와 위 공장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B는 원고가 위 공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장 내의 사무실을 제공해 주지 않는 등 위 계약에서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는바, B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전대차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B는 이 사건 수족관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위 공장의 일부를 계속 사용하였고 종전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는데, 원고는 그 당시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수족관의 영업권 및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함'이라는 내용의 인수확인내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③ 제1심 증인 D는 제1심 법정에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족관의 공장 및 기계를 쓰는 조건으로 B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했다, 계약금이 들어오면 수족관을 만들고 팔아서 재료비를 제하고 남은 순수익을 반반 나눴다, 2,000만 원은 공장사용료이다, 공장 월세는 55만 원으로 원고와 자신이 반반씩 내기로 했고, 전기세 · 수도세는 B가 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수족관의 공장을 전대차 형식으로 빌린 것이라고 한다면, B로서는 굳이 위 공장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 경비용역비를 계속 부담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박미영, 판사 최민혜